

일반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운용방법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조(교육목표) 민주교육의 근본이념과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는 동시에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연구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학문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 3조(과정) ①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학과간 협동과정 또는 산학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학과(전공) 및 정원

제 4조(학과(전공)) ① 본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1.09.2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5조(학과의 설페) 본 대학원의 학과(전공)설치와 폐지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야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 3 장 입 학

제 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7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②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 8조(본교재직 전임교원의 지원자격) 본교의 전임교원은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휴직한 후 입학할 수 있다.

제 9조(입학전형) 입학 전형은 필답고사(전공, 외국어, 실기) 또는 서류전형으로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등록) ① 학생은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3 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료자의 등록) ①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학칙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②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기에 논문준비 등을 위해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휴학) 휴학은 질병, 출산, 육아 또는 기타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2. 22>

제13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 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 ②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 ③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 ④ 재학연한 내에 해당학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제15조(자퇴)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7조(편입학) 일반 편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제 5 장 학점, 수업연한, 수료, 전과, 교육과정

제18조(학점인정 일수) 타당한 사유 없이 학기 중 수업일수의 1/30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제19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5	2.0
F	69이하	0

제20조(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 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 이상 되어야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학점인정) ①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된다.

② 편입학한 자가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연한) ① 대학원의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② 국내·외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 또는 학점의 조기취득, 학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석·박사과정은 6월 이내, 통합과정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10년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학년도 등)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1.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2.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24조(이수학점) ①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 60학점(석사24학점 포함)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교과학점은 전공학점과 부전공 또는 선택(교직) 교과학점으로 한다.

③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연구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본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제25조(수강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은 매학기9학점, 박사과정 학생은 매학기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나 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과장은 학생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전공변경)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며 각 과정의 2학기초에 신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2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29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제30조(자격시험 종류)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1조(자격시험)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각 과정의 수료일로부터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③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자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후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3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심사)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학 기간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이상인 자
3.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 학위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교원중에서 지정하는 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한다.

제33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제출은 다음 각 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선정
연구계획서 제출
지도보고서 제출
논문발표 및 심사
학위논문 제출

- ② 박사학위논문
 - 지도교수 선정
 - 연구계획서 발표(기초연구 발표)
 - 연구계획서 제출
 - 지도보고서 제출
 - 논문발표 및 심사
 - 학위논문 제출

제34조(학위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한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35조(학위등록 및 학위수여) ① 각 학위과정별 학위는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표2 >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 ②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학위종별) 학위종별은 <별표2 >와 같이 한다.(개정:2019. 12. 09)

제37조(학위 수여자격) 석·박사학위 수여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 ① 석사 24학점 이상, 박사 60학점 이상(석사24학점포함) 취득자
- ②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③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④ 1학기(박사2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 ⑤ 논문심사(시험)에 합격한 자
- ⑥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8조(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수여자를 결정하는 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사정위원장으로 하여 석사학위 수여대상자 사정을 실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학위수여 및 구분) 본 대학원에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학원 : 학술석사학위, 학술박사학위

②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제40조(박사학위 수여) 박사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하며, 학위종별은 학칙 36조에 따른다.

제41조(명예박사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한다.

제42조(학위수여 시기)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는 연2회로 하고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본 대학원의 정규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학위기 양식) 학week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 ① 석사학위 - 별지1
- ② 박사학위 - 별지2
- ③ 명예박사학위 - 별지3

제44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우드 색깔은 다음과 같다.

① 후우드 색깔

전 공	해당학위	후우드색깔
보석디자인공학	공학석사	주황색

- ② 후우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 ③ 학위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제 9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6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47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직 제

제49조(대학원장)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0조(조직)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마다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제51조(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각 학과(전공)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두며 학과장은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1 장 위원회

제52조(대학원위원회)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03.27.)

제53조(대학원위원 임기)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4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학칙에 의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일반대학원 위원회는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

제55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최소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고, 법인이사회 의결 후 확정·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 등 상위 규범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개정
2. 미미한 내용 및 명백한 오류 수정을 위한 내용의 개정
3. 단순한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

부 칙

제 1조(위임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제 2조(세부 시행규정)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2학년도 입학정원)

<별표 1>

대학원 입학정원표

(1) 석사과정

계 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공 학	보석디자인공학	10

(2) 박사과정

계 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공 학	보석디자인공학	3

<별표 2>

일반대학원 학과별 수여학위명

학과(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보석디자인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단,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세부전공(보석공학, 디자인)을 필요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별지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가 야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명) 0 0 0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 야 대 학 교 총 장 (학위명) 0 0 0

학위수여번호 : 가야대 (석)

(별지 2)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가 야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명) 0 0 0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 야 대 학 교 총 장 (학위명) 0 0 0

학위수여번호 : 가야대 (박)

(별지 3)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_____
였고 본 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가야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명예 _____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가 야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명) 0 0 0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 _____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가 야 대 학 교 총 장 (학위명) 0 0 0

학위수여번호 : 명박 (나) 제 호